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OF DELIVERY – 일반약관

1 SEPTEMBER 2025

AVAILABLE AT WWW.BRONKHORST.COM/TERMSANDCONDITIONS

제1조. 신원회사 정보

공식 명칭: Bronkhorst Korea Co. Ltd

사무실 주소: 대한민국 경기도 화성시
동탄순환대로 830

SK V1 Center, 209

전화번호: +82 1644 4540

이메일: sales@bronkhorst.kr

등록번호: 119-86-74469

제2조. 용어의 정의

2.1. 본 일반 인도 약관에서 문맥상 명백히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큰따옴표("")로 표시된 용어는 "제 2.4 조"에서 정한 의미를 가집니다.

2.2. 본 일반 인도 약관에서 단수로 표기된 명사, 대명사 및 동사는 문맥상 필요한 모든 경우에 복수를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2.3. 본 일반 인도 약관에서 "포함"과 같은 용어는 해당 용어가 사용된 목록이 한정적인 것이 아님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됩니다.

2.4. 정의:

"계약"이란 "Bronkhorst"가 "고객"에게 "제품" 및/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고, 고객이 해당 "제품" 및/또는 "서비스"를 구매하기로 약정하는 "서면" 계약을 의미합니다.

"Bronkhorst"는 Bronkhorst Korea Co. Ltd.(회사의 세부정보는 제 1 항에 기재)를 의미합니다.

"조"란 본 "일반 약관"의 조항을 의미합니다.

"고객"이란 "Bronkhorst"와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체결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기타 주체를 의미합니다.

"인도"란 "고객"이 "제품"을 이용할 수 있는 시점에 실제로 "제품"을 수령하였는지 여부 및/또는 "Bronkhorst"가 합의된

"서비스"를 실제로 이행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고객"이 해당 "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ULA"는 모든 "소프트웨어"에 대해 "Bronkhorst"가 사용하는 최종 사용자 라이선스 조건을 정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일반 약관"이란 본 문서에 명시된 "Bronkhorst"의 "제품" 및/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Bronkhorst"의 일반 약관을 의미합니다.

"제품"이란 "Bronkhorst"가 제공, 판매 및/또는 인도하는 모든 물품을 의미합니다.

"서비스"는 "계약"에 따라 "Bronkhorst"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로서, 특히 유지보수 및 수리의 수행, 교육 프로그램, 워크샵, 강의 및 교육의 제공을 포함합니다.

"소프트웨어"란 "Bronkhorst"가 "고객"에게 제공하거나 "계약"의 일부로서 "제품"과 함께 제공하는 모든 소프트웨어(예: (프로그래밍) 코드 및 (소스 및 소프트웨어) 파일)를 의미하며, "고객"을 위해 맞춤화, 설치, 구성 또는 확정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합니다.

"시험 인도"란 "일반 약관" "제 6 조"에 따른 "인도"를 의미합니다;

"서면"이란, 서면, 이메일 또는 "Bronkhorst"와 "고객" 간에 합의된 기타 전자적 수단으로서, 메시지가 저장되며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읽을 수 있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제3조. 일반조항

3.1. 본 "일반 약관"은 "Bronkhorst"가 "고객"에게 "제품", "서비스" 및/또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제안하는 모든 "계약", 제안, 견적 및 주문에 적용됩니다. 본 "일반 약관"과 다른 내용은 "Bronkhorst"가 "고객"에게 "서면"으로 명시적으로 확인한 범위 내에서만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3.2. "Bronkhorst"와 "고객"이 본 "일반 약관" 외에 본 "일반 약관"의 내용과 명시적으로 상충하도록 의도된 별도의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OF DELIVERY – 일반약관

1 SEPTEMBER 2025

AVAILABLE AT WWW.BRONKHORST.COM/TERMSANDCONDITIONS

조건에 대하여 "서면"으로 명확히 합의한 경우, 해당 별도 조건이 본 "일반 약관"의 조항에 우선합니다.

- 3.3. 본 "일반 약관"이 국문 이외의 언어로 번역된 경우, 사용되는 모든 법률 용어는 국문으로 제공된 해석에 따라 해석되어야 합니다.
- 3.4. "고객"은 특히 OECD의 환경, 노동, 인권, 부패 및 경쟁에 관한 책임 있는 기업 행동 가이드라인을 포함하여, "Bronkhorst"와의 관계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모든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할 것을 보증합니다.
- 3.5. "고객"은 "제품"을 재판매하는 경우, 모든 적용 가능한 (국제) 무역 제한, 통제, 제재 목록 및 기타 제재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4조. 계약의 작성 및 조건

- 4.1. 견적서에 달리 명시되지 않은 한, "Bronkhorst"가 발행한 견적서는 30 일(역일 기준) 동안 유효합니다. "Bronkhorst"는 모든 주문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4.2. "고객"과 "Bronkhorst" 간의 "계약"은 견적서 및/또는 주문 확인서의 서명 여부와 관계없이, "고객"이 제출한 주문에 관하여 "Bronkhorst"가 서면으로 주문을 확인함으로써 성립합니다.
- 4.3. "고객"은 라이선스 및 허가와 같은 적절한 (접근) 권한을 포함하여 "Bronkhorst"가 "계약"을 정확하고 적시에 이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협력을 제공하여야 하며, "고객"은 본인이 제공하거나 고객을 대신하여 제공된 데이터 및/또는 사양의 정확성, 완전성 및 신뢰성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 4.4. "Bronkhorst"가 판매 카탈로그, 기타 광고 자료 및/또는 "Bronkhorst"의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제품"의 명시된 수량, 치수 및 중량을 포함하는 삽화, 이미지, 도면 및 모델은 제품에 대한 보증이 아니며, 단순한 근사치로서 "제품"에 대한 일반적인 인상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 4.5. "Bronkhorst"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계약"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해당 설명은 항상 한정적으로 열거된 것입니다.
- 4.6. "고객"이 의도한 주문 내용과 "Bronkhorst"의 서면 주문 확인서 간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 "고객"은 "Bronkhorst"의 주문 확인서에 구속됩니다. 단, "고객"이 주문 확인일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Bronkhorst"에게 해당 주문 확인서가 주문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4.7. "제 4.2 조"에 따라 "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고객"은 해당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계약"의 취소는 (i) "Bronkhorst"와 "고객"이 취소 비용을 포함한 취소 조건에 대해 "서면"으로 합의하고, (ii) "Bronkhorst"가 해당 취소 조건이 완전히 이행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고객"이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른 법적 권리에 따라 취소를 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 4.8. "Bronkhorst"의 "서면" 주문 확인 이후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근거가 있거나 "고객"의 사전 동의를 얻은 경우, "Bronkhorst"는 "고객"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최신 기술에 따라 "제품"을 제공하거나 또는 "제품"의 제조 방식, 자재 선택 및 사양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변경이 중요한 측면에서 주문과 상충되지 않으며 "제품"의 형태, 적합성 및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4.9. "Bronkhorst"의 "제품"은 당시의 현행 "Bronkhorst" 버전을 준수합니다. "Bronkhorst"는 "제품"을 새로운 버전으로 업데이트하고, 해당 제품의 이전 버전 "인도"를 단계적으로 중단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4.10. "Bronkhorst"는 인도된 "제품"의 예비 부품을 "인도" 후 5년 동안 보유하기 위해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이나, 특정 "제품"은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예비 부품의 보유 가능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OF DELIVERY – 일반약관

1 SEPTEMBER 2025

AVAILABLE AT WWW.BRONKHORST.COM/TERMSANDCONDITIONS

제5조. 상품 인도

- 5.1. "Bronkhorst"와 "고객"이 "인도" 조건에 대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제품"의 "인도"는 인코텀즈(Incoterms®) 2020에서 정의된 EXW(Ex Works) 조건에 따라, 대한민국 화성시 동탄순환대로에 위치한 "Bronkhorst"의 각 장소에서 이루어집니다.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제품"은 "Bronkhorst"의 표준 포장 절차에 따라 포장됩니다.
- 5.2.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고객"은 "인도"가 이루어진 주소에서 "인도" 일로부터 5 영업일 이내에 제품을 수령하여야 합니다. "고객"이 "제품"을 기한 내에 수령하지 않은 경우, "고객"은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으며, "Bronkhorst"는 "제품"의 보관 및 관리에 대해 합리적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5.3. "Bronkhorst"는 어떠한 경우에도 인도일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고객"과 "Bronkhorst" 간에 합의된 인도일은 확정적인 기한이 아닌 인도 예상일이며, 이러한 인도일을 초과하더라도 "Bronkhorst"의 채무불이행 및/또는 "Bronkhorst"의 책임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 5.4. "Bronkhorst"는 주문을 분할하여 인도하거나 전체 주문이 "인도" 준비가 될 때까지 유보할 권리가 있습니다.
- 5.5. "제품"은 "인도" 전에 "Bronkhorst" 또는 제조업체의 표준 검사 및 시험 절차에 따라 "Bronkhorst"에 의해 검사 및 시험을 거치게 됩니다. "고객"이 요구하는 추가 시험 또는 검사, 시험 인증서 및/또는 상세한 시험 결과의 제공은 "Bronkhorst"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그 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 5.6. "고객"은 "제품"을 자신의 시스템, 기계 및 장비에 설치 및 조립할 책임이 있으며, 이러한 설치 및/또는 조립 작업은 "서면"으로 명시적으로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Bronkhorst"의 "인도" 의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5.7. 현장 수용 시험(Site Acceptance Test, SAT)이 합의된 경우, "고객"은 가능한 한 신속히, 어떠한 경우에도

"인도"일로부터 30 일(역일 기준) 이내에 SAT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SAT가 성공적으로 완료된 후, "고객"은 "Bronkhorst"가 제공한 수락서, 확인서 또는 증명서를 지체 없이 작성해야 합니다. "고객"이 SAT가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전에 제품을 (상업적으로) 사용한 경우, 해당 "제품"은 "고객"에 의해 수락되고 "계약"에 부합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5.8. SAT 수행 과정에서 "제품"이 기술 사양 또는 합의된 시험 기준에서 벗어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고객"은 해당 SAT 수행일로부터 5 영업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서류와 함께 "Bronkhorst"에게 "서면"으로 이를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
- 5.9. "고객"이 "제 5.7 조"에 명시된 기한 내에 "Bronkhorst"에게 수락서를 보내지 않거나, "고객"이 "제 5.8 조"에 명시된 기한 내에 "Bronkhorst"에게 이탈 사항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해당 "제품"은 "고객"에 의해 수락되고 "계약"에 부합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5.10. SAT 수행 중 시험 기준이 충족되지 않아 시험 진행이 지연되는 것이 명백해지는 경우, "Bronkhorst"와 "고객"은 상호 합의 하에 시험 기간을 연장하고 해당 합의를 "서면"으로 문서화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시험 인도

- 6.1. "시험 인도"란 시제품, 샘플 또는 0-시리즈와 같이 테스트, 시험 또는 검수 목적으로 "제품"을 "인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 "일반 약관"은 "시험 인도"에 적용됩니다.
- 6.2. "Bronkhorst"와 "고객"이 "시험 인도"에 합의하는 경우, 비용, 기술 사양, 시험 기준 및 준수해야 할 절차 및 프로토콜에 관하여 협의합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합의 사항은 "시험 인도" 전 또는 "시험 인도" 시점에 "Bronkhorst"와 "고객"이 별도로 "서면"으로 문서화합니다.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OF DELIVERY – 일반약관

1 SEPTEMBER 2025

AVAILABLE AT WWW.BRONKHORST.COM/TERMSANDCONDITIONS

제7조. 서비스

- 별도로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않는 한(예를 들어, 시간 및 자재 기준으로 제공되는 "Bronkhorst" "서비스"), "고객"은 "Bronkhorst"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해진 수수료를 "Bronkhorst"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Bronkhorst"는 주행거리, 교통, 출장, 식사 및 숙박 비용 등 "계약" 이행 중 발생한 비용을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서비스"의 "인도" 중 또는 그 이후에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이는 추가 작업으로 간주됩니다. "Bronkhorst"는 추가 작업이 필요함을 "고객"에게 즉시 알리고 이와 관련한 예상 비용을 제시합니다. 추가 작업은 "고객"이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수행됩니다. 추가 작업 비용은 "Bronkhorst"의 적용 비율에 따라 산정됩니다.
- "고객"은 "Bronkhorst"가 "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Bronkhorst" 및/또는 그 직원이 자연으로 인한 손해를 포함한 부상이나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Bronkhorst"는 "Bronkhorst"의 독자적인 재량에 따라 "Bronkhorst" 직원들의 안전 또는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는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서비스"의 수행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고객"은 "계약" 이행 과정, 특히 "서비스" 제공 중 "제 7 조"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Bronkhorst" 및/또는 그 직원에게 발생한 모든 부상 또는 손해에 대하여 "Bronkhorst" 및/또는 그 직원에게 책임을 집니다.
- "Bronkhorst"는 해당 "서비스"가 "제 10 조"에 따라 "Bronkhorst"가 제공하는 보증 범위 내에서 수행되는 "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 한, "서비스" 제공 요청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8조. 가격, 청구 및 지급

- 제시되고 합의된 모든 가격은 원화이며, 부가가치세(해당하는 경우), 수입세 및 기타 모든 세금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Bronkhorst"는 "인도" 또는 "제 5.4 조"에 따른 분할 "인도"가 이루어진 후 청구서를 발행할 권리를 가집니다.
- "계약"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고객"은 청구일로부터 30 일(역일 기준) 이내에 어떠한 공제, 할인 또는 상계 없이 청구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 간에 본 조항에 따른 표준 지급 조건에서 벗어나기로 합의한 경우, "Bronkhorst"는 계약금 또는 기타 유형의 담보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지급 조건과 관계없이 각 지급 기한은 확정적인 기한으로 간주됩니다.
- "고객"은 지급 유예를 요청할 권리가 없으며, "제 18.1 조"에 따른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청구 금액의 지급 기한이 즉시 도래하며, 해당 금액은 즉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 "계약" 체결 이후 "인도" 이전에 비용 결정 요인(공급 가격, 운송비, 수출입 관세, 임금, 세금, 부과금 및/또는 적용 가능한 외화 환율 변동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음)에서 최소 5% 이상의 (가격) 상승이 발생하는 경우, "Bronkhorst"는 "계약"에서 합의된 가격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인상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경우, "Bronkhorst"는 비용 결정 요인의 인상으로 인한 가격 인상을 지체 없이 "고객"에게 통지해야 하며, "고객"은 "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있습니다.
- 지급이 연체된 경우, "Bronkhorst"는 "고객"에게 (i) 연체 금액에 대한 법정 상사 이율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ii) 최소 300 유로를 하한으로 하는, 합리적으로 발생한 모든 (징수) 비용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고객"이 지급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Bronkhorst"가 "계약"에 따른 의무를 종지하는 것을 포함하여 "Bronkhorst"의 기타 법적 및 계약상 권리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OF DELIVERY – 일반약관

1 SEPTEMBER 2025

AVAILABLE AT WWW.BRONKHORST.COM/TERMSANDCONDITIONS

8.6. “고객”이 “제 8.2 조”에 따른 계약금을 지급하거나 담보를 제공(해당하는 경우)할 때까지, “Bronkhorst”는 언제든지 “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을 중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8.7. 리콜 조치, 보증 청구 또는 “제품”에 대한 기타 불만 사항은 이전 또는 향후 “인도”와 관련된 “고객”的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Bronkhorst”에게 지급해야 하는 모든 금액의 지급을 유예할 권리를 “고객”에게 부여하지 않습니다.

제9조. 소유권의 유보

9.1. “제 5.1 조”와 상충되는 내용에도 불구하고, “Bronkhorst”는 모든 “계약”에 따라 “고객”에게 인도하였거나 인도 예정인 모든 “제품”에 대하여, “계약”에 따른 대금이 전액 지급될 때까지 “제품”에 대한 소유권을 계속 보유합니다. “고객”이 다른 의무로 인하여 “Bronkhorst”에게 지급할 금액이 있는 경우, 상기 소유권 유보는 “고객”이 해당 금원을 지급할 때까지 적용됩니다.

9.2. “고객”은 통상적인 사업 수행 과정 중에 소유권 유보 상태로 인도된 제품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으나, 해당 “제품”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질권을 설정하거나, 기타 제 3 자가 어떠한 방식으로든 권리를 취득하도록 하여서는 안 됩니다. “고객”은 소유권 유보 상태로 배송된 제품을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 보관하고, “Bronkhorst”的 소유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제품”이 혼동 및/또는 부합을 통해 “고객”的 소유로 귀속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소유권 유보 하에 인도된 “제품”을 (추후) 판매하는 경우, “고객”은 해당 “제품”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9.3. “고객”은 소유권 유보 기간 동안 해당 “제품”的 손상 및 도난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객”은 “Bronkhorst”的 요청에 따라 관련 보험 증권의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9.4. 제 3 자가 소유권 유보로 인도된 “제품”을 압류하거나, 이에 대한 권리를 설정하거나 행사하는 경우(또는 그러한

의도를 보이는 경우), “고객”은 즉시 “Bronkhorst”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제품”에 대한 “Bronkhorst”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9.5. “고객”이 “Bronkhorst”에 대한 “계약”상의 중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Bronkhorst”는 재량에 따라 “고객”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고, 소유권 유보 조건으로 인도된 “제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는 “Bronkhorst”的 손해, 이익 상실 또는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및 “서면” 통지 통해 별도의 추가 통지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Bronkhorst”的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10조. 보증 및 불만 제기

10.1. “Bronkhorst”는 각 “제품”이 모든 중요한 측면에서 “계약”에서 합의된 기술 사양을 충족하며 네덜란드 및 유럽연합의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함을 진술하고 보증합니다. “Bronkhorst”는 “제품”이 기타 (현지)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함을 진술하고 보증하지 않습니다. “고객”이 추가 인증, 시험 또는 검사를 요구하는 경우, 관련 비용은 “고객”이 지불해야 합니다.

10.2. “Bronkhorst”는 다른 “상품”과 연계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특히 의학적 사용을 포함하여 “고객”에 의한 “제품”的 모든 적용 가능성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10.3. “서비스”(의 “인도”)에 관한 “Bronkhorst”的 모든 “고객”에 대한 의무는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노력의 제공으로 구성됩니다. “Bronkhorst”는 자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특정한 결과를 달성할 것이라는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제 10.1 조”에 따른 명시적이고 제한적인 보증을 제외하고, “소프트웨어”, “제품” 및 “서비스”는 ‘있는 그대로’ 제공되며,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가 오류가 없이 또는 중단 없이 제공될 것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Bronkhorst”는 특히 모든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소프트웨어”,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특정 목적에의



Bronkhorst®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OF DELIVERY – 일반약관

1 SEPTEMBER 2025

AVAILABLE AT WWW.BRONKHORST.COM/TERMSANDCONDITIONS

상업성 및 적합성에 대한 묵시적 보증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 모든 기타 명시적 또는 묵시적 보증을 부인합니다.

10.4. “소프트웨어”와 관련하여 “Bronkhorst”가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유지보수, 지원 및 기타 모든 작업은 보증 없이 ‘있는 그대로’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Bronkhorst”는 “소프트웨어”에 오류가 없으며 중단 없이 작동하거나 “소프트웨어”的 오류 또는 버그가 수정되거나 개선될 것이라는 점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고객”은 자신의 데이터를 백업하고, “소프트웨어”가 작동하지 않거나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경우 그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보할 책임이 있습니다.

10.5. “제 10.1 조”에 따른 보증을 위반하는 경우, “Bronkhorst”는 자사의 재량에 따라 관련 “제품”을 무상으로 교체 또는 수리하거나, 해당 “제품”에 대해 청구된 금액을 (적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비례적으로) 환불하여야 합니다.

10.6. “제 10.5 조”에 따른 “제품”的 전부 또는 일부의 교체 또는 수리와 관련하여, “Bronkhorst”는 교체되는 (일부) “제품”과 동일하거나 최소한 유사한 기술 사양을 충족하는 유사한 (일부) “제품”을 인도함으로써 “제품”的 교체 또는 수리 의무를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Bronkhorst”는 대체 “제품”(또는 그 일부)을 합리적인 조건과 합리적인 경로를 통해 확보 가능하다고 “Bronkhorst”가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교체할 의무가 있습니다.

10.7. “제 10.1 조”에 명시된 보증에 따른 모든 청구는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소멸합니다.

- “제품”的 “인도” 후 3년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단, 해당 기간의 마지막 1년 동안 “Bronkhorst”가 해당 “제품” 또는 그 일부에 대해 보증에 따른 서비스나 수리를 수행한 경우, 해당 작업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의 추가 보증 기간이 해당 작업에 적용됩니다.
- “시험 인도”에 해당하는 경우. 단, 해당 “시험 인도”가 인도된 “제품”的 구매로 전환된 경우에는 “제 10.7 조”

a 항에 따른 3년의 보증 기간이 “시험 인도”的 “인도”가 이뤄진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 “고객”이 “Bronkhorst”에 대한 지급을 이행하지 않거나, 기타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 “제품”的 결함이, “제품”이 의도된 목적과 인도된 상황에 맞게 사용되지 않은 사실, 부적절한 사용, 부적절한 유지보수, “고객”的 시스템, 기계 또는 장비에 대한 “고객”的 부적절한 “제품” 설치 및 또는 조립(예: “고객” 시스템의 오염), 일반적인 마모, 또는 “Bronkhorst”가 제공한 (제품)정보, (제품) 권고사항, (사용자 및/또는 처리) 자침 및/또는 (안전)지침을 위반한 “고객”的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 부적절한 사용에는 “제품”을 올바르게 보관하지 못하여 예컨대 먼지, 습기 또는 기타 물질에 의해 오염된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 “고객”이 직접 또는 제 3자를 통하여 “제품”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 “Bronkhorst”가 제 3의 제조업자로부터 “제품” 또는 그 일부를 조달하였고, “Bronkhorst”가 해당 제조업체에 대하여 보증 청구권을 가지지 않거나 더 이상 가지지 않는 경우
- “고객”이 결함을 발견한 날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Bronkhorst”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

제11조. 불만 제기

11.1. “고객”은 “배송”된 “제품”이 “계약”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수령 즉시 또는 그 직후에 “제품”을 점검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객”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품”的 외관상 하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는 특히 “제품”的 품질, 손상 여부 및 완전성을 기준으로 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11.2. “고객”이 “제 11.1 조”에 따른 점검 과정에서 인도된 “제품”이 “계약”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발견한 경우,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OF DELIVERY – 일반약관

1 SEPTEMBER 2025

AVAILABLE AT WWW.BRONKHORST.COM/TERMSANDCONDITIONS

“고객”은 해당 “제품”의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Bronkhorst”에게 그 부합하지 않음을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인도”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는 통지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제 11.1 조”에 따른 점검을 통해 합리적으로 발견할 수 없었던 “제품”의 하자가 있는 경우, “고객”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자를 발견한 날로부터 30 영업일 이내에 이를 “Bronkhorst”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11.3. “제 11.2 조”에 따른 통지 후, “고객”은 “Bronkhorst”的 지침을 따르고 “Bronkhorst”가 불만사항을 적시에 적절하게 처리하는 데 필요한 모든 협력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제품”이 현재 또는 과거에 사용된 장소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하거나, 검사 목적으로 “고객”的 비용으로 “제품”을 반송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11.4. “고객”은 “Bronkhorst”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불만사항이 있는 경우 “서비스”가 제공된 날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지체 없이 “서면”으로 “Bronkhorst”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불만 사항에 대한 가능한 한 구체적인 설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11.5. “제 11.2 조” 및 “제 11.4 조”에 명시된 기한을 초과하는 경우, “고객”에게 발생할 수 있는 관련 권리는 모두 소멸하며, 여기에는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 청구권 및 위반 또는 부적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포함되나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Bronkhorst”가 “제 10.1 조”에 따라 부여한 보증이 “제 10.7 조”에 따라 소멸한 이후에는 “고객”은 어떠한 불만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또는 더 이상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는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른 “고객”的 법률상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12조. 책임

12.1. “Bronkhorst”, 그 임직원 및/또는 “Bronkhorst”的 지휘 하에 있는 자의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의 위법 행위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Bronkhorst”, 그 임직원, 그 “제품”

및/또는 “Bronkhorst”가 (지원을 위하여) 고용하는 자로 인하여 발생한 간접적인 손해(예를 들어, 결과적 손해, 매출 손실, 이익 손실, 저축의 손실, 영업권 상실, 사업 부진으로 인한 손실, “소프트웨어”, 데이터 또는 정보의 오류, 중단 또는 손실로 인한 손실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에 대하여 “Bronkhorst”는 어떠한 (위험 기반)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12.2. “Bronkhorst”는 구두로 제공된 조언, 정보, 권고 또는 이에 준하는 성격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품”과 함께 제공되는 서면 사용 설명서는 “인도” 시점을 기준으로 한 “Bronkhorst”的 지식과 경험에 기반합니다. “고객”이 “제품”的 운송, 보관 또는 사용 중에 관련 지침을 일부 또는 전부 준수하지 않은 경우, “Bronkhorst”는 “제품”的 품질 또는 제품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2.3. “고객”이 의도하는 “제품”的 사용 목적에 관한 “Bronkhorst”的 모든 책임은 면제됩니다.

12.4. “Bronkhorst”的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에 따른 손해에 대한 “Bronkhorst”的 책임은 “Bronkhorst”的 책임 보험사가 해당 청구에 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액(및 실제로 지급하는 금액)에서 “Bronkhorst”가 해당 책임보험 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자기 부담금(최대 150,000 유로 한도)을 더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Bronkhorst”的 책임 보험이 해당 청구를 전부 보장하지 않는 경우, “Bronkhorst”的 책임은 해당 책임을 발생시킨 “제품”, “소프트웨어” 또는 “서비스”에 대해 (세금 제외)에 대해 “Bronkhorst”에게 지불된 금액(세금 제외)을 한도로 제한됩니다.

12.5. 본 “제 12 조”的 책임 제한은 각 사건별로 적용되며, 관련되는 일련의 손해 발생 사건은 단일 사건 또는 단일 청구로 간주됩니다.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OF DELIVERY – 일반약관

1 SEPTEMBER 2025

AVAILABLE AT WWW.BRONKHORST.COM/TERMSANDCONDITIONS

12.6. “고객”은 자신이 “Bronkhorst”로부터 공급받은 “제품”을 어떤 제 3 자에게 제공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기록을 보관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고객”的 고객들에게도 (i) 누구에게 “제품”을 재판매하는지 명시하고, (ii) 이와 동일한 의무를 그들의 고객들에게 부과하도록 요구하여야 합니다.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 “Bronkhorst”는 이러한 정보를 요청할 권리가 있으며, “고객”은 “Bronkhorst”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13조. 면책

13.1. “고객”은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계약”的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이와 관련된 모든 제 3 자의 청구, 손해, 책임, 비용 및 지출(변호사 비용을 포함함)에 대하여, 해당 손해가 “Bronkhorst” 및/또는 “Bronkhorst”가 제공한 “제품”, “소프트웨어” 또는 “서비스”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Bronkhorst”를 면책, 방어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13.2. 만약 손해가 “고객”에게 일부 귀책사유가 있는 사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고객”은 해당 손해에 대해 최소한 그 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을 반드시 배상하여야 합니다. “고객”은 본 “제 13 조”에 명시된 위험에 대비하여 적절한 보험에 가입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4조. 불가항력

14.1. “Bronkhorst”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계약”상 의무(그 준비를 포함함)를 이행할 수 없는 기간 동안 어떠한 의무도 이행할 의무가 없으며, 합의된 “인도” 기한은 불가항력의 기간만큼 연장됩니다. 위에서 언급된 불가항력에는 다음이 포함되나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i) “Bronkhorst”的 합리적인 통제를 벗어난 모든 사유, (ii) “Bronkhorst”的 공급업체가 그들의 합리적인 통제를 벗어난 사유(노동 문제 포함)로 인해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iii) “Bronkhorst”的 사업장 중 한 곳에서 발생한 화재, (iv) 정부의 조치, (v) 전염병 또는 팬데믹의 발생, (vi)

파업, (vii) 전쟁, (viii) 정전, (ix) 해킹, 랜섬웨어 공격 및/또는 DDOS 공격.

14.2. “Bronkhorst”가 “계약”을 이미 일부 이행한 상태에서 불가항력이 발생하는 경우, “고객”은 이미 인도된 제품의 해당 부분을 보관하고, 이미 제조된 “제품”을 수령 및/또는 수용하며, “Bronkhorst”에게 해당 “제품”에 대한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본 의무는 “고객”이 해당 “제품”的 나머지 부분의 미인도로 인해 해당 “제품”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없거나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불가항력으로 인해 나머지 부분의 “인도”가 12 개월을 초과하여 지연되는 경우, “고객”은 해당 “제품”(이미 이행된 부분 포함)에 대하여 “계약”을 해제할 권리를 가집니다. 이 경우 “고객”은 (i) 이미 인도된 “제품”을 “고객”的 비용 및 위험 부담으로 “Bronkhorst”에게 반환하거나, (ii) 이미 인도, 제작 또는 주문된 제품의 가치를 “Bronkhorst”에게 보상해야 합니다.

제15조. 지식재산권

15.1. “서면”으로 명시적으로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제품”, “소프트웨어” 및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Bronkhorst”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기타 모든 항목(도면, 문서, 보고서, 삽화, 계산, 설계, 공정, 모델 및/또는 소스 파일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에 대한 지식 재산권 및/또는 산업 재산권은, 해당 “제품”이 “고객”的 사양에 따라 “Bronkhorst”가 제조되거나 조립된 경우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Bronkhorst” 또는 그 라이선서에게 귀속됩니다.

15.2. “고객”은 “Bronkhorst”的 사전 “서면” 허가 없이 “제품” 또는 “소프트웨어”的 저작권 고지, 로고, 상표 및 상호 등을 포함한 지식재산권 또는 산업재산권, 또는 기타 다른 식별표시를 사용, 제거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15.3. “Bronkhorst”와 “고객” 간 “계약” 이행 과정에서 지식재산권이 발생하는 경우, “서면”으로 명시적으로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해당 지식재산권은 “Bronkhorst”에게 귀속됩니다. 법률에 따라 “고객”에게 지식재산권이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OF DELIVERY – 일반약관

1 SEPTEMBER 2025

AVAILABLE AT WWW.BRONKHORST.COM/TERMSANDCONDITIONS

귀속되는 경우, “고객”은 “계약” 체결 시 해당 지식재산권을 사전에 “Bronkhorst”에게 이전하며, 필요한 경우 해당 이전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협조를 제공합니다.

15.4. “고객”과 해당 “고객”的 잠재적인 최종 고객은, “제품”的 기술 명세서 및 지침 또는 “소프트웨어”에 대해 “EULA”에 명시된 바에 따라, “제품” 및 “소프트웨어”的 지식재산권을 비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받습니다. 앞 문장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고객”은 “제품” 및 “소프트웨어”的 지식재산권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권리나 라이선스를 보유하지 않으며, 사용권에는 “제품” 또는 “소프트웨어”的 지식재산권을 수정, 구성 또는 확장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16조. 소프트웨어

16.1. “Bronkhorst”와 “고객”이 본 “일반 약관”과 상충되는 조항이 포함된 “EULA”를 체결하는 경우, 해당 “EULA”的 조항이 우선합니다.

16.2. “고객”은 “계약” 및/또는 “EULA”的 범위 내에서 정해진 목적으로만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6.3. “고객”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소프트웨어”的 전부 또는 일부를 리버스 엔지니어링, 디어셈블 또는 디컴파일하거나, 소스 코드 또는 로직을 파악하거나 추출하려고 시도하는 행위
- 기술적 보안 조치를 제거하거나 우회하는 행위
- “소프트웨어”를 수정할 수 있게 하는 “Bronkhorst”가 배포하지 않은 플러그인 또는 확장기능을 사용하는 행위

16.4.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Bronkhorst”로부터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경우, “Bronkhorst”는 “고객”에게 해당 업데이트를 제공할 것입니다. “Bronkhorst”는 업데이트 자격에 대한 조건(수수료 포함)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Bronkhorst”는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거나

“소프트웨어”的 오류 또는 버그를 수정할 의무는 없습니다.

제17조. 비밀유지

17.1. 제공된 모든 문서, 매뉴얼 및 “제품” 관련 기술 정보를 포함하여 업무 프로세스 및 “제품” 관련 정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고객” 및 “Bronkhorst”와 관련된 모든 비공개 정보는 기밀 정보로 간주됩니다. “고객”과 “Bronkhorst”는 상대방의 기밀 정보를 제 3 자에게 공유하지 않습니다. 또한, “고객”과 “Bronkhorst”사이에 합의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제품” 및/또는 “소프트웨어”的 특정 용도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가 아닌 한, “고객”과 “Bronkhorst”는 자신의 사업 운영의 이익을 위하여 상대방의 기밀 정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18조. 해지

18.1. 다음의 각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Bronkhorst”는 “고객”에게 “서면” 통지함으로써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고객”에게 발생하는 비용 또는 손해에 대하여 어떠한 보상 의무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 “고객”이 파산 신청을 하거나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또는 이와 유사한 지급불능 절차가 “고객”에게 적용되는 경우
- “고객”이 (잠정적인) 지급정지를 신청하거나 이를 받은 경우, 또는 이와 유사한 지급불능 절차가 “고객”에게 적용되는 경우
- “고객”이 채권자들에게 (강제적) 화해를 제안하는 경우(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방법으로)
- “고객”的 중요 자산이 압류되고, 해당 압류가 압류일로부터 14 일(역일 기준) 이내에 해제되지 않은 경우
- “고객”이 해산된 경우
- “고객”이 후견 또는 재산관리의 대상이 된 경우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OF DELIVERY – 일반약관

1 SEPTEMBER 2025

AVAILABLE AT WWW.BRONKHORST.COM/TERMSANDCONDITIONS

- g. “고객”이 “계약” 또는 “일반 약관”에 따른 중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기타 위반한 경우
- h. 고객”이 “Bronkhorst”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고객”이 “제 3.5 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는 위 (g)항에 따른 사유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 i. “계약” 체결 이후, “고객”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타당한 근거가 “Bronkhorst”에 의해 인지된 경우
- j. “Bronkhorst”가 “제 9.5 조”에 명시된 해지권을 행사한 경우

이 모든 경우에도 “Bronkhorst”는 “고객”에게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제19조. 의사소통

- 19.1.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계약”과 그 이행에 관한 모든 의사소통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19.2. 이행청구 및 채무불이행 통지는 등기우편을 통해 발송하여야 하며, “Bronkhorst”가 이행하여야 하는 사항과 그 이행 기한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제20조. 권리 및 의무의 이전

- 20.1. “고객”은 “계약” 및/또는 “일반 약관”에 따라 또는 이와 관련하여 “Bronkhorst”에 대해 가질 수 있는 모든 청구권을 제 3 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습니다.
- 20.2. “Bronkhorst”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한, “고객”은 “계약” 또는 “일반 약관”, “계약” 및/또는 “일반 약관”에 따른 의무 및/또는 “계약” 또는 “일반 약관”에 관한 법적 지위를 제 3 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습니다. “Bronkhorst”는 “고객”의 “계약” 및/또는 “일반 약관”의 목적 달성을 불가능하게 하지 않는 한, “계약” 또는 “일반 약관”을 제 3 자(그 승계인, 계열사 또는 관련 회사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이전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21조. (부분적) 무효 또는 취소 가능성

- 21.1. “일반 약관”의 조항이 무효이거나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일반 약관” 전체가 무효이거나 취소 가능한 것은 아니며, 다른 조항도 (부분적으로) 무효이거나 취소 가능한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일반 약관”의 조항이 무효이거나 취소할 수 있는 경우(그리고 무효화된 경우), “Bronkhorst”는 무효이거나 무효로 된 조항의 취지를 가장 충실히 반영하는 유효한 조항으로 해당 조항을 대체합니다.

제22조. 권리 포기, 준거법 및 관할 법원

- 22.1. “일반 약관”에 달리 명시되지 않은 한, “고객”의 “Bronkhorst”에 대한 청구는 해당 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단, 해당 기간 내에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관련 법률 및 규정에서 요구하는 경우 더 긴 법정 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22.2. “Bronkhorst”와 “고객” 간의 모든 법적 관계는 대한민국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U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의 적용은 명시적으로 배제됩니다.
- 22.3. “일반 약관”에 따라 “Bronkhorst”와 “고객” 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Bronkhorst”의 주소지 법원의 전속 관할에 따릅니다. 당사자들은 달리 합의할 수 있습니다.